## 국회의장 및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 (이정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916

발의연월일: 2025. 2. 5.

발 의 자:이정문・박 정・이인영

이학영 · 문진석 · 황명선

이연희 • 어기구 • 임광현

김우영 · 이상식 · 김현정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국회법」 제13장 '질서와 경호'에 따라 국회의장은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고,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국회의장의 지휘에 따라 회의장 건물 밖을 경호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서처럼 국회경비대가 계엄사령부의 지휘를 따라 국회를 봉쇄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의의사당 진입을 막는 등 국회 보호에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냄.

이에 국회경비대처럼 경찰청으로부터 파견받는 형태가 아니라 국회 자체적인 경호, 경비 조직을 신설하여 헌법기관인 국회가 스스로 질서 를 유지하고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## 국회의장 및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회의장 경호 및 국회 경비 등을 담당하는 국회 경호단의 조직과 직무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회 자체적인 질 서 유지를 통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국회 역할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국회경호단) ① 국회사무처에 국회경호단(이하 "경호단"이라 한다)을 둔다.
  - ② 경호단에 국회경호단장(이하 "단장"이라 한다) 1명을 두되, 단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.
  - ③ 단장은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호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호 단원(경호단에 파견된 사람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지휘·감독한 다.
- 제3조(직무) 경호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  - 1. 국회의장(이하 "의장"이라 한다), 국회부의장, 그 밖에 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
  - 2. 회의장을 포함한 국회 관할구역과 의장 공관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한 경계·순찰 및 방비 등의 안전 활동
- 제4조(보상) 직무 수행 또는 그와 관련하여 상이(傷痍)를 입고 퇴직한

경호단원과 그 가족 및 사망(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)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상을 한다.

- 제5조(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) 국회사무총장(이하 "사무총장"이라 한다)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공공단체(이하 "관계기관"이라 한다)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제6조(국회경호안전대책위원회) ① 경호단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,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에 국회경호안전대책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있다.
  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,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  - 1. 경호 등에 필요한 안전대책과 관련된 업무의 협의
  - 2. 경호 등과 관련된 첩보ㆍ정보의 교환 및 분석
  - 3. 그 밖에 경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
  -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.
- 제7조(경호단원의 사법경찰권) ① 경호단원(단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지명한 경호단원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직무 수행 중

-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(司法警察官吏)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경우 7급 이상 경호단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, 8급 이하 경호단원은 사법경찰리(司法警察吏)의 직무를 수행한다.
- 제8조(직권 남용 금지 등) ① 경호단원은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  - ② 경호단에 파견된 자는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직무를 수행할수 없다.
- 제9조(무기의 휴대 및 사용) ① 단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호단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태에 대응하여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.
  - 1. 「형법」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
  - 2. 직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로 사형,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

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호단원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피시키려고 경호단원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 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

3. 야간이나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호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경호단원에게 항거할 경우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

제10조(벌칙) 제8조 또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.